

#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「법원조직법」(법률 제17125호, 2021. 2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한 기관으로 개편되는바, 법관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청구(이하 ‘징계등 청구’라 함)가 이루어진 경우 법관징계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(안 제3조의2)

## 4.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관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) 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
<신   설>	제3조의2(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) 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	
연락처	(02) 3480 - 1796